표준계약서 최초제정 2011. 11. 01
최종수정 2025. 05. 01

※ 가맹점 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KSPAY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진행 시 체크하셔야 할 구비서류 리스트입니다.

구비서류 중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사업자번호		가맹점명		영업담당자	

사업자	서류명	확인[O]
공통	대표자 신분증 사본 1 부(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신청 시)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이용 계약서[KSCROW]	
	KSPAY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사항	
	(대리인 작성 시) 대리인 확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서 1 부	
개인사업자	KSPAY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 원본 1 부(공동대표 모두 인감날인 必)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 부(공동대표 모두 3 개월 이내 발급분)	
	정산 입금계좌 사본 1 부	
법인사업자	KSPAY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 원본 1 부(공동대표 모두 법인인감 날인 必)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必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 부(공동대표 모두 3 개월 이내 발급분)	
	정산 입금계좌 사본 1 부(법인계좌)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 부(3 개월 이내 발급분)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주주명부 / 정관,규약 / 이사회명부 등 택 1)	
비영리 법인 (기관/단체/학회)	KSPAY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 원본 1 부(기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공식 인장으로 날인)	
	정산 입금계좌 사본 1 부(법인계좌)	
	고유번호증 사본 1 부	
	인장확인서 원본 1 부(계약서 날인과 다른 경우 처리 불가)	
	정관(설립목적) 1 부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주주명부 / 정관,규약 / 이사회명부 등 택 1)	

KSPAY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사항

1. 상점정보(* 표시는 필수 작성사항 입니다.)

*상 호	한글명		*대표자	한글명	
	영문명	*법인만 해당*		영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만 해당*		국 적	
*법인의 국적		*법인만 해당*	*연락처		(대표자HP) 010-
*법인 유형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대표번호)
*설립목적		*비영리법인 필수 작성*	팩 스		
*자금의 원천		□ 사업소득 □ 자본금 □ 기타	*거래목적		□ 사업 □ 기타
협력업체(호스팅)			*업 종		
*쇼핑몰 URL			*주요판매품목		
*사업자 주소		(우편번호)			
*대표자 주소		(우편번호)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신청	(신청 시) 사용정보		IP : Port :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정보 모두 작성

1-1. 실제소유자 정보(개인사업자만 해당) □ 대표자 정보와 동일

한글명		영문명	
생년월일		국 적	

2. 정산 계좌 정보(* 표시는 필수 작성사항 입니다.)

*은행명		*통장인감
*계좌번호		(인)
*예금주		

1-2. 대리인 정보(대리인이 작성 시)

한글명		영문명			
국내거주여부	□ Y □ N	국 적		생년월일	

3. 담당자 정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계약담당자				@
정산담당자				@
전산담당자				@

4. 실제소유자 확인(법인 사업자만 해당, 단계 중 택1)

구분		선택	지분율
1단계	**25%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최대 지분 소유자 中 1인	□	%
2단계	① **25%미만**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소유자 中 1인	□	%
	②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 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사람)**	□	-
	③ ①,② 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中 1인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X)	□	

실제소유자 정보							
*한글명		*영문명		*생년월일		*국적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주식회사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신용정보사 보고서 □기타
주식회사 외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이사회명부 □정관 □사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금융회사 □[1]사업보고서 제출법인(상장법인 등)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한함

실제소유자 확인 작성자 정보			
*직책		*성명	

* 주주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최대 지분 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사람**으로 작성 필요

202 년 월 일

대표자 : (인)

*인감 날인 必

KSPAY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

[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과)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이하 '회사'라 한다)은 KSPAY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제공 서비스
본 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 서비스
2. 가상계좌 서비스
3. 계좌이체 서비스
4. 휴대폰결제 서비스
5. 에스크로 서비스
6. 상품권 결제서비스
7. 간편결제 서비스
8. 상호 합의한 추가 서비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결제시스템 :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이용자 : '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금액을 결제하는 자로서 각 결제수단의 실제 소유자를 말한다.
3. 결제수단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제종류로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에스크로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결제정보 : 이용자가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각 결제수단별 제반 정보를 말한다.
5. 결제기관 : 금융기관(신용카드사, 은행 등), 선불카드 사업자 및 국내법상 인정하는 기타 결제수단의 승인기관을 말한다.
6. 거래승인 :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결제정보를 결제기관으로 전송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당 거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을 말한다.
7. 판매대금 :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판매내역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8. 정산 : 결제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점'의 쇼핑몰 판매내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회사'가 결제기관의 제수수료 및 회사의 제수수료를 공제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산대금 : '가맹점'과 '회사'간의 정산을 통하여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10. 매입 : 거래 승인을 얻은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의 대금 정산을 위하여 '회사'가 '가맹점'을 대행하여 결제기관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간편결제 서비스 : '회사'와 제휴한 간편결제사가 제공하는 관련 시스템에 이용자가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 시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Web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 가맹점의 책임 및 의무
①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맹점'에 제공한 전자결제시스템 및 이와 연관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관련 문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가맹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임의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복제, 판매, 양도, 대여, 누설, 기타 불법적인 사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 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맹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다. 다른 사업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마.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③ '가맹점'은 이용자의 거래에 대하여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이용자가 소비자 보호 관련법령에 의한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통하여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은 '회사' 명의로 청구되지만, 판매자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 쇼핑몰 이용약관 등에 고지하는 방법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은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보유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가맹점'이 정기과금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및 이용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의 책임 및 의무
'회사'의 책임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는 '가맹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회사'는 '가맹점'의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원활히 '가맹점'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관련법령 및 기타 '가맹점'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 시간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자결제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가맹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서비스 제공 중지

① '회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관련법령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회생 및 파산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3. '가맹점'이 본 계약 체결 시 판매 상품 및 서비스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 시 등록한 상품 및 서비스와 다른 것을 판매한 경우
4, '가맹점'에 대한 민원이 대량 접수되는 경우
5. '가맹점'이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에 통지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7. 특별한 사정없이 14일 이상 거래승인 요청이 없거나 '가맹점'의 거래에서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8. 기타 '가맹점'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 제한,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한 취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맹점'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본 조의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

④ '회사'는 '가맹점' ID가 1년 이상 장기 미 사용된 경우 해당 ID를 휴면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ID 휴면 상태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가맹점'은 '서비스' 및 기타 특약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게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가입비, KSPAY수수료 등으로 구분되고 세부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가맹점'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요금표에서 정한 가입비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가입비가 미납되었을 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개시를 거절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가입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가입비는 전자결제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 등록 비용으로, 전산 등록 업무가 완료되어 가맹점 ID가 발급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서면, 메일, KSPAY 홈페이지(www.ksnet.co.kr) 또는 전자결제시스템 공지 중 하나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을 변경하거나 정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결제기관과 '회사'간의 결제수단별 수수료와 정산 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법령, 금융시장 및 기타 시장상황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월 승인 금액의 증감, 불량 또는 부정거래의 발생 건수 및 금액, 민원 발생의 빈도수에 따라 '회사'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등

① 본 계약의 서비스 이용요금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영세・중소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결제를 대행하는 자로서 해당 법령에 의해 연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영세・중소사업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자신이 정한 영세・중소사업자 우대수수료를 '가맹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의 우대수수료 적용을 위해 '회사'는 신용카드사에게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대수수료는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그 적용대상자인 경우에 한하며, '회사'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영세·중소사업자 명단을 수신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우대수수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맹점'은 본 조의 우대수수료 적용 시, 해당 우대수수료가 법령에 의한 '가맹점'의 사업자 지위 변동에 따라 매 반기별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④ '가맹점'은 자신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고 다른 사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려는 경우 등록 예정일 최소 1개월 전까지 '회사'에게 전자금융업 등록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지 지연에 따라 '가맹점'의 다른 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민원 및 손해는 '가맹점'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⑤ '가맹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이미 완료한 자이거나 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이 예정된 자인 경우, '가맹점'의 다른 사업자들을 위한 차액정산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서면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⑥ '회사'는 법령의 개정, 결제기관 수수료 변경, 시장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정한 영세·중소사업자 우대수수료를 변경 및 적용할 수 있다. '회사'는 '가맹점'에게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KSPAY 홈페이지 또는 전자결제시스템 공지 또는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우대수수료는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가맹점'은 '회사'의 변경된 우대수수료 적용을 거절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⑦ 본 조의 우대수수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가맹점'이 '회사'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당하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등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의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본 손해에는 '회사'가 신용카드사에게 별도로 부담하는 추가 위약금 등의 패널티를 포함한다.

제10조 가맹점 ID 관리 및 책임

① '가맹점'은 '회사'가 발급한 가맹점 ID와 비밀번호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 부정사용 및 기타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 발생 시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배송

① '가맹점'은 거래승인 건에 대하여 거래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상품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배송의 책임을 지며, 배송이 완료된 거래는 즉시 '회사'로 관련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단, 가상계좌 및 계좌이체 서비스의 배송은 정상 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의 배송 시 인수 인도의 증빙을 위하여 소정의 증빙자료(상품 수령증, 배송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또는 운송장 등)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품의 배송 증빙자료는 거래승인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가맹점'의 배송이행여부를 해당 거래의 이용자에게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배송 이행 지연 및 미배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가맹점'이 '회사'의 배송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거절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킬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 지급 보류 및 정산한도 감액, 정산주기 변경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배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승인제한

① '회사'는 '가맹점'의 업종, 서비스 형태, 민원 발생 빈도, 불량 또는 부정거래 발생, 결제기관의 요청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가맹점'의 월 정산한도 및 할부 개월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쇼핑몰 또는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결제기관

으로부터 비정상 거래 등으로 확인되어 한도가 제한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에서 불가 업종 운영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즉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정산
① '회사'는 결제기관으로부터 '가맹점' 쇼핑몰 판매내역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상호 합의한 정산주기 단위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② 정산대금 정산 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첨 등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회사'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게 월 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및 배부한다.
④ '회사'는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결제기관의 지급 기일과 연동하여 정산대금을 차회로 자동 연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⑤ '회사'는 특정 결제수단에서 발생한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과 '회사'는 '서비스' 거래 중에 정산대금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 후 과오납 금액을 제 4 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된 대금 또한 제 4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 취소 건에 대하여 '회사'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결제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본 계약 및 별첨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정산대금은 원 단위 이하 절사하여 계산한다.
⑨ '회사'가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을 지연 또는 미 입금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⑩ 취소매입음수(취소누적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클 경우 발생) 발생 시 '회사'는 '가맹점'의 정산대금에서 상계 처리하며, 부족할 경우 정산대금을 지급보류 할 수 있다.
⑪ 대금의 정산은 '가맹점'의 월 정산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대금이 월 정산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따른 담보 제공 시까지 보류하거나 익월에 지급할 수 있다.
⑫ '가맹점'의 불가 업종 운영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확인 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최소 90일간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보류 및 거래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 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거래 등으로 간주하여 '가맹점'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취소를 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로 이용자의 민원 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본인 미 사용(신용카드의 경우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를 포함한다)이나 상품 미 배송 등의 이의제기를 한 경우
3. '가맹점' 정산대금의 비정상적 증감 또는 이용자의 정산된 거래가 민원 등으로 취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회사' 또는 결제기관의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소명 요청을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미 이행하는 경우
5. '가맹점'에서 발생한 거래로 인하여 결제기관에서 '회사'에 대한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하거나 차감, 거래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6. 본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인 본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거래취소 및 이의제기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지급보류 또는 거래취소한 정산대금이 이미 '가맹점'에 지급된 경우에는 '회사'는 '가맹점'에 지급할 차기 정산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차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지급보류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서비스' 중지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어 '회사'의 손해 예상금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가맹점'이 지급보류 금액 상당의 담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3. 할부 거래의 할부 결제 기간이 종료되고, 이용자의 할부 항변 또는 결제기관의 지급보류, 차감, 거래취소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한 경우
4. 상호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④ 본 조에 따라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이 '가맹점'에 지급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지연 이자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민원의 처리
①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가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동 사유로 결제기관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문제 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 '회사'는 '가맹점'에게 이용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3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메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이 이용자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가맹점'이 '회사' 및 결제기관의 민원 처리 등의 소명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산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취소
2. 취소된 거래에 대하여 정산대금에서 상계처리
3. '서비스' 이용 및 승인 등의 거래 제한
4. '가맹점'이 제공한 담보 청구
④ '회사'는 '가맹점'에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 민원이 불량 또는 부정거래이거나 거래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에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회사'는 '가맹점'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16조 담보의 제공 및 월 정산한도
① '가맹점'은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호 합의하에 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 등으로 담보제공을 갈음하거나 담보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보의 설정금액은 '가맹점'의 매출규모, 자산건전성, 판매 신용도, 거래안전장치(소비자피해보상보험, 매매보호장치 등)확보 등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서비스' 제공 중이더라도 '가맹점'의 매출규모 증감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시 '회사'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③ 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보의 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 연장 시 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 기간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증권 제출(갱신 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④ 본 계약기간 중 '서비스'를 통하여 '가맹점'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가맹점'이 제출한 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는 본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해지하지 아니한다.
⑤ '가맹점'의 월 정산한도는 담보설정금액을 고려하여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⑥ '회사'는 정산한도 증액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한도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또는 정산대금 지급보류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담보 기간을 미 갱신하는 경

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공
①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긴급 요청 시 요청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가맹점'과 '회사'는 제1항의 거래정보를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단,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의 관련법령에 의한 자료 제출 명령 및 감독기관과 결제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한 사항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거래취소 및 환불
'가맹점'은 기 매입 처리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구매취소 시 '회사'와 신용카드사 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 및 할부거래에 관한 이용약관'에 준용하여 처리하며, 즉시 '회사'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여 '회사'가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입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외발행카드의 경우는 매입처리 완료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중재
본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신용카드 중 국내발행카드는 이용자의 이의제기 시 발행 카드사의 중재를 받을 수 있으나, 해외발행카드의 경우 중재를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2장 가상계좌 및 계좌이체 서비스

제20조 가상계좌 관리
① '회사'는 '가맹점'이 사용할 가상계좌를 배정하고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배정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부여한다. 단, '회사'는 '가맹점'의 이용자가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받은 후 일정 기간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상계좌를 회수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발급된 가상계좌의 취소에 따른 이용자의 입금 관련 이의제기에 대해서 '가맹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가상계좌를 부여 받은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가상계좌 부여 시 해당 가상계좌는 입금 고객의 소유가 아니며, 정산대금 거래만을 위하여 입금되는 사실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를 '회사'가 허용한 업무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거래확인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가상계좌 및 계좌이체를 통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출력된 자료 또는 화면 조회에 의하여 확인하며, '회사'는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가맹점'의 가상계좌 또는 계좌이체에 대한 입금내역은 명백한 오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회사'가 '가맹점'에게 전송한 조회화면으로 확정된다.

제22조 가상계좌 서비스 거래취소 및 환불
① 거래승인 취소 요청은 불가하며, 만약, 이용자로부터 입금거래취소 및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이용자로부터 동 내용을 접수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취소 불가 건에 대하여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거래취소에 따른 환불 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우선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하고 해당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한다.

제23조 계좌이체 서비스 거래취소 및 환불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일 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 관련 결제수단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고, '회사'는 이를 '가맹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제3장 휴대폰결제 서비스

제24조 거래확인 및 취소
①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된 정산대금은 '회사'로 입금된 대금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가맹점'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③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부모가 결제 정지 요청이 있을 시 '가맹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 및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를 결제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민원 등)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⑤ 본 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라 함은 만 19 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이는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⑥ 휴대폰으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결제 해당 월 중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⑦ '회사'는 정산대상월의 "거래" 중 수납된 거래금액에 대한 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

제4장 상품권 서비스

제25조 상품권 서비스
① 상품권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규정, 각 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5장 기타사항

제26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의무
①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맹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요청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중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고객확인자료, 금융거래자료 등)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정산대금

을 지급보류 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8조 계약의 변경
'가맹점'과 '회사'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의 해지
① '가맹점'과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는 서면 통지로 일정 기간 최고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대방의 신용악화, 파산, 화의, 부도, 청산, 폐업, 업종변경, 합병, 기타 민·형사 연루 등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상대방의 주요 재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해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5. 자가거래 등의 부정거래를 일으킬 경우

② '회사'는 '가맹점'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거래행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대금 지급보류 또는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2. 최종 상품 인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증빙자료(상품인수증, 배송회사에서 발행한 배송장, 운송장 등)을 작성하여 '회사'에게 전송 또는 제출한 경우
3. '회사'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결제 및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4. '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부정매출이 발생하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5.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6. 결제기관으로부터 '가맹점'의 불가 업종 운영이 확인되어 거래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
7. 회원제, 다단계, 현금융통을 하거나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8. 매출신고 의무를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제30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 내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손해의 원인이 천재지변, 폭동, 전쟁, 소요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②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 결제기관의 업무적/기술적 장애, 통신업체의 통신장애, 정전, 기타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또는 처리 불능 등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제31조 등록상표의 사용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한 등록상표 및 로고를 사용해야 하며,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삽입, 배치해야 한다.

제32조 양도 금지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의 지위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33조 비밀유지
①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그 사항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일방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에 응해야 한다.

제34조 통지
① '가맹점'과 '회사'간의 모든 통지는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가맹점' 및 이용자에게 통보할 사항이 있는 경우 메일, KSPAY 홈페이지 또는 전자결제 시스템 공지를 통하여 고지함으로써 본 조의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은 자신의 주소 또는 연락처, 대표이사 변경, 업종변경 등의 가맹점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게 해당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가맹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 정보를 미 변경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회사' 및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손해 발생 시, '가맹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5조 기타 유의사항
① '회사'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 또는 이벤트 행사 등의 진행 시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가맹점'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정한 방식과 다른 형태로 공지하거나, 오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③ '회사'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 또는 이벤트 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지는 '가맹점'이 본 계약 시 제공한 대표 메일로 발송한다.
④ '회사'는 '가맹점'의 본 계약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미이행 시 본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산대금의 승인제한 및 지급보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결제기관과의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가맹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5, 2층 (서초동)
상 호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대표이사 : 박 한 국 (인)

KSNET

[별첨1] 서비스 이용 요금표

(부가세 별도)

구 분		이용 여부	수수료	정 산 주 기	비 고
가입비			[ ]원		면제
관리비			[ ]원		면제
KSPAY 수수료	신용카드(국내)	( )	[ ]%	D+ ( )일 * D : 매입일	신용카드사 수수료 포함
	신용카드 영세·중소사업자		[ ]%		중소3 우대수수료
			[ ]%		중소2 우대수수료
			[ ]%		중소1 우대수수료
			[ ]%		영세 우대수수료
	신용카드(해외)	( )	[ ]%		해외 발급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 )	카드 : 신용카드 수수료 + [ ]% 머니 : [ ]%		
	네이버페이	( )	카드 : 신용카드 수수료 + [ ]% 머니, 포인트 : [ ]%		
	페이코	( )	카드 : 신용카드 수수료 + [ ]% 포인트 : [ ]%		
	SSGPAY	( )	카드 : 신용카드 수수료 + [ ]% 머니 : [ ]%		
	LPAY	( )	카드 : 신용카드 수수료 + [ ]% 포인트 : [ ]%		
	가상계좌	( )	[ ]원/건		은행수수료 포함
	계좌이체	( )	[ ]%		최소수수료 : 150 원
	휴대폰결제	( )	실물 [ ]%		실물 상품 결제 수수료
			컨텐츠 [ ]%		컨텐츠 상품 결제 수수료
	현금영수증	( )	□ 신청 □ 미신청		무상제공
정산한도			월[ ] 원		정산대금이 월 정산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담보 제공 시까지 지급보류함
보증보험증권			[ ] 원		
부가세표기			□ 표기 □ 미표기		면세사업자의 경우 미표기 필수사항

※ KSPAY수수료 및 결제기관 부가 수수료는 신청하신 서비스에 한해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 계좌이체 수수료는 만오천원 미만의 결제는 최소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 KSPAY수수료는 결제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및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비는 1회성 비용으로 KSPAY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snet.co.kr)에 접속하여 가입비 결제메뉴에서 홈페이지에 명기된 입금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KS'NET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서

본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 및 취급 위탁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취급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구 분	필수동의사항
수집·이용 목적	■ KSPAY 서비스 이용 신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유지·이행·관리 ■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전화상담업무
수집·이용 할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자택), 이메일, 연락처(휴대폰, 자택) ■ 가맹점정보 : 상호명, 국적,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사업장주소, 연락처(휴대폰, 사업장), 팩스번호, 통장 계좌정보, 영업개시일, 주요 판매 품목 ■ 거래정보 : 매출정보(신용,체크,선불,휴대폰소액결제,간편결제,가상계좌,계좌이체,현금,현금IC 등) ■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가맹점 계약해지)일로부터 5년까지 (단, 관계법령에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름)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또는 유지가 불가능함
본인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대표자 **(인)**

1-2.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구 분	필수동의사항
수집·이용 목적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령상 의무 이행(고객확인, 특정금융거래 보고)
수집·이용 할 정보의 내용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운전면허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가맹점 계약해지)일로부터 5년까지 (단, 관계법령에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름)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또는 유지가 불가능함
본인의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대표자 **(인)**

2.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구 분	필수동의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체크·선불카드 : 전 카드사, 전 은행(현금IC 및 직불카드 결제 시), (사)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 계좌이체 : 전 은행, 전 증권사, (사)금융결제원 ■ 가상계좌 : 전 은행, ㈜케이아이비넷, ㈜헥토파이낸셜 ■ 휴대폰 : ㈜다날, ㈜KG모빌리언스, ㈜다우기술, 페이레터, 인포뱅크㈜, ㈜LG유플러스, ㈜신안정보통신 ■ 포인트 : 전 카드사 ■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운영사 ■ 상품권 :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아이앤씨, 아이앤플레이 ■ 포인트 : 전 카드사 ■ 공공기관 :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 등
제공 목적	■ 거래승인, 청구, 정산, 분쟁해결, 통계자료활용, 제휴 업무의 활용 등 ■ 공공기관 : 세무자료수집, 금융사고조사, 범죄수사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번호제외)
보유 및 이용기간	■ 제휴 계약(업무) 종료 시 또는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련법령에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름)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또는 유지가 불가능함
본인의 필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대표자 **(인)**

3. 개인(신용)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사항

구 분	필수동의사항
수탁자	■ 회사로부터 업무 처리를 수탁 받은 업체 (SK엠앤서비스㈜, 신세계아이앤씨IDC)
위탁목적	■ SK엠앤서비스㈜ : KSPAY 서비스 관련 고객민원처리 ■ 신세계아이앤씨IDC : 재해복구서비스
위탁대상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번호 제외)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 계약(업무)종료 시 또는 위탁 목적 달성 시 까지(단, 관계법령에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름)
본인의 제3자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KS'NET

KS'NET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KSCROW]' 이용 계약서

_____(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이하 '회사'라 한다.)은 '가맹점'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통하여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회사'이 제공하는 '케이에스넷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이하 'KSCROW'라 한다.)'를 이용하여 판매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KSCROW'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이에 따른 '가맹점'과 '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인터넷 쇼핑몰 :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2. 구매자 :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으로 '가맹점'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KSCROW' 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3. 표준배송일 :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구매자의 구매대금 입금완료가 확인되는 시점 으로부터 '가맹점'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4. 상품확인기간 : 상품의 배송이 완료된 후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일치하는 지 확 인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5. 가상계좌결제정보 : 구매자가 '가맹점'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회사'의 KSPAY서비스를 통해 제시한 주민등록번호,성명,거래계좌발급은행,연락처, E-Mail등 가상계좌 거래승인을 받기 위한 제반 정보를 말한다.
6. 가상계좌서비스 : '회사'가 은행 내에 '회사'의 대표 모계좌를 두고 가상의 자계좌를 '가맹점'의 구매 자에게 부여하여 온라인상에서 '가맹점'의 판매대금 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업무를 '회사'의 명의로 '가맹점'을 대신하여 처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KSCROW의 범위)

1. 가상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2. 기타 '가맹점'과 '회사'간에 합의에 의한 부대 서비스

제4조 (당사자의 의무)

1.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의 개발 및 운영
나.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 및 '회사'에게 배송정보 통지
다. 구매자의 상품에 대한 클레임 처리 등을 포함한 고객 관리고객관리
라. 구매자의 환불, 취소요구에 대한 응대 및 '회사'에게 환불요청
마. 인터넷 쇼핑몰에 'KSCROW' 관련 내용의 공지
바.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업무내용의 수정사항 등의 추가개발 및 운영

2. '회사'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가. KSCROW에 필요한 부대 S/W 개발 또는 업무 협력
나. KSCROW의 이용현황 및 결과 등의 자료 제공
다. 가상계좌 결제 기능의 제공

제5 조 (서비스 이용절차)

1. 'KSCROW'는 아래 제2항의 정보가 '회사'에게 송부 완료되고 대금결제가 다음과 같이 이루 어진 시점에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가. KSCROW를 통한 가상계좌 거래대금이 '회사'에게 입금이 확인된 시점.
2. 'KSCROW'를 위해서 '가맹점'은 거래에 따른 주문번호, 고객주민번호, 거래금액, 대금지불수단, 거래일시 등의 거래정보 및 표준배송일, 택배사, 송장번호 등의 배송정보를 거래성립 즉시 '회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KSCROW'는 다음의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한다.
   가. '구매자'가 수령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수령을 완료하여 이에 대해 표준배송일에 상품확인기간을 더한 기간 내에 구매거절이나 취소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구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한 시점.
   나. '구매자'가 표준배송일 및 상품확인기간을 더한 기한 내에 상품에 대해 거절이나 취소의 사를 통지하고, '가맹점'이 반품된 상품에 대한 수령을 완료하여 반품에 대한 이의가 없으며 해당 건에 대한 환불승인을 하여 '회사'가 거래대금을 고객에게 환불한 시점.
4. '제3항 나호'의 경우 '구매자'가 반품하는 도중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과 '구매자' 간 분쟁해결 후 양 당사자가 해결사실을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회사'는 동 해결내용을 근거로 양 당사자에게 정산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서비스 조건)

1. '가맹점'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2. '가맹점'은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현금을 이용하여 결제 완료한 경우 거래 발생일로부터 '표 준배송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배송 또는 전달을 책임지며 이에 따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고, '회사'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3. '가맹점'이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동 대금 정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정산되어 '가맹점'에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동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4. '회사'는 '가맹점'에게 상호 협의된 주기로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 료를 '가맹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KSCROW' 수수료)

'KSCROW' 이용 수수료는 부칙 내용에 따르며 정산 시 '회사'가 공제하기로 한다.

제8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가맹점'과 '회사'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 계약에서 정한 '가맹점' 또는 '회사'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3. '가맹점' 또는 '회사'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기타 상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도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계약이 정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동 내용을 '가맹점'에게 통보하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11 조 (처리불능 등)

1. '가맹점'과 '회사'는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통신망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이외의 이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점'과 '회사'는 귀책사유에 따라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2. 제 1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과 '회사'는 신속하게 상황을 상호 전달하도록 노력하며 장애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KSCROW'에 대한 지적 소유권)

계약에 의거 '회사'가 개발한 'KSCROW' 프로그램의 지적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다.단, 양사의 협력에 의해 공동 개발한 부분의 지적소유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비밀준수)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않도록 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1.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2. '가맹점'이 'KSCROW'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을 제 3자에게 판매, 배포, 양도하여,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거나 국내 및 국외에서 제 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 제기 형사고소 등을당할 경우, '가맹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을 면책 시키며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 (부속 계약서의 체결)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본 계약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부속 계약서를 통하여 서면으로써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면합의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기 타)

1. 본 계약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공동이익과 '가맹점'의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2.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의한다.

제18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쌍방이 기 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가맹점'과 '회사'가 기 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가맹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회사'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5 2층, (서초동)
업 체 명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대 표 이 사 : 박 한 국 (인)

- 부칙 -

1.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요금 (부가세별도)

구분	내용	비고
에스크로서비스 이용요금	없음	추후 서비스 형태 변화에 따른 이용요금 부과 발생할 수 있음.

(이하여백)